2020년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봄기출 · www.bomgichul.com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X] **(정답)**

지적공부는 원칙적으로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O]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X]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도면(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X]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하지 않으며,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 관련 사항이다.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X]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X]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O] **(정답)**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공통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등록된다.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X]
변전소·송신소·수신소는 잡종지에 해당하나,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광천지"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어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O] **(정답)**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의 정의 예시와 정확히 일치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되어 있다.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X]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에 해당하나,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의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이어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X]
물건 등을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창고용지"의 정의에 해당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X]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은 잡종지에 해당하나,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유원지"의 정의에 해당하여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이 아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O]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O]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X] **(정답)**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시행공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하므로 시행자 선정 절차 자체가 없다).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O]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O]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은 시행공고 사항이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O]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O]
지적공부 복구시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따른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X] **(정답)**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O]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O]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O] **(정답)**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X]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X]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X]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X]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정정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X]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보행·차량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X]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X]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의 정의상 도로에 포함된다.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X]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O] **(정답)**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에 해당하여 도로로 정할 수 없다.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O]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O]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사항이다.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X] **(정답)**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로 설치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O]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O]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다.

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ㄴ)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X]
ㄱ:시·도지사, ㄴ:15일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X]
ㄱ:시·도지사, ㄴ:30일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X]
ㄱ:시·도지사, ㄴ:60일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O] **(정답)**
ㄱ:지적소관청, ㄴ:15일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X]
ㄱ:지적소관청, ㄴ:30일의 조합은 옳지 않다.

1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X]
ㄱ:지적불부합지, ㄴ:붉은색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X]
ㄱ:지적불부합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X]
ㄱ:지적불부합지, ㄴ:담당자의 자필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O] **(정답)**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붉은색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X]
ㄱ: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굵은 고딕체의 조합은 옳지 않다.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O] **(정답)**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X]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X]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X]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는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X]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확정공고 이후의 절차이므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니다.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O] **(정답)**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다.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시·도지사가 아니다).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X]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상기관이 아니다.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시·도지사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다.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X]
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13번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대위등기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전제로 한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X]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아니라 채권자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O]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대위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乙에게도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⑤ ㄴ, ㄷ, ㄹ

14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X]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X]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X]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뿐,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지 않는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정답)**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에 의한 등기).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X]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수용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원시적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① ㄱ, ㄷ **(정답)**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번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O]
甲 소유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양도인)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X]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丙 명의 등기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부상으로는 그 직전 등기명의인인 乙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甲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O]
채무자 甲에서 乙로 이전등기 후 甲의 채권자 丙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그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⑤ ㄴ, ㄷ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X]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이 없는 원시취득의 등기이기 때문).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O]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O]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1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O]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X] **(정답)**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등기).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O]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O]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O]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1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O]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등기부 갑구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고, 합유인 경우 그 뜻을 기록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X] **(정답)**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로 등기할 수 있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제권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O]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정답)**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에 따르므로, 취득자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O]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O]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O]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O]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X]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정답)**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O]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O]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X] **(정답)**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23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O] **(정답)**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특성상(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을 담보)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X]
지연배상액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X]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공동신청이 아니다).

2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 **(정답)**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